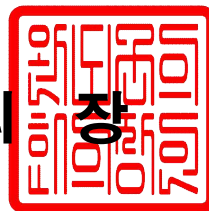


완도군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완도군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년 3월 31일

완 도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완도군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2. 발 의 자 : 조인호 의원

3. 제정이유

- 완도군 관내 아동, 청소년, 여성 등이 학교폭력, 범죄피해, 안전 사고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목적과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책무(안 제3조)
- 취약지역의 선정(안 제4조)
- 사업추진(안 제5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
- 관련부서의 협조(안 제7조)

5. 관련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 조례안 예고기간 : 2023. 3. 31 ~ 2023. 4. 5.

7. 의견제출

-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4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완도군의회의회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이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완도군의회 의회사무과(의정지원팀)

-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48 / (우) 59121

(전화: 061-550-5936, FAX: 061-550-5907)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 전화 · 팩스 · 직접방문 등

8. 기타

○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과 의정지원팀(전화: 061-550-593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2. 완도군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1부.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조례안 예고명

완도군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완도군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의 조례안 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완도군의회 의장 귀하

완도군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관내 아동, 청소년, 여성 등이 학교폭력, 범죄피해,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안심귀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심귀가”란 주민이 범죄피해나 안전사고위험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귀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안심귀가도우미”란 일몰시간 이후 여성, 청소년, 아동 등이 원하는 경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동행 하는 것을 업무로 하는 근로자 등을 말한다.
3. “안심조명시설”이란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4. “안전시설물”이란 CCTV, 안심조명시설, 보안등, 비상벨, 안내표지판 등 범죄 취약지역 환경 개선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완도군수는(이하 “군수”라 한다.) 안전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안전한 귀가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취약지역의 선정) 군수는 안심귀가 환경을 조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 고려한다.

1. 사건·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2. 1인 가구가 밀집한 주거지역 등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지역
3. 아동·청소년 보호가 필요한 학교 주변 및 주택가 골목길
4. 여성 및 관련 단체가 취약지역으로 제안한 지역 등

제5조(사업추진) ① 군수는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심귀가도우미 채용 및 운영
2. 안전시설물의 설치
3. 보안등 및 안심조명시설 설치
4.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고려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관련부서의 협조) 안심귀가 환경 조성관련 사업추진 부서는 재난관리부서장의 협조 요청시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